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연차수당 등 임금지급

“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 인지 체불액은 줄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 1.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가?

파트타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나,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편하게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컫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퇴직금,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를 말하는데 full-time 또는 part-time 형태로 근로하며 파트타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로 일컬어지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주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급휴일이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면 1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

하여 산정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을 전제로 월정액이 책정되므로 일반적으로 월정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월급근로자에게 월급 외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임금을 시급으로 책정하여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는 파트타임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 시급근로자 4주간(계속근로시) 임금지급액 (동일 사업장 통상근로자 1일 8시간, 주5일 근무)

- ① 1일 6시간, 주 5일 4주 = (6시간×5일×시급×4) + (4일 주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 ② 1일 4시간, 주 3일 4주 = (4시간×5일×시급×4) + (4일 주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 일급근로자 1일 8시간, 주 5일 4주 = (일급×5일×4주) + (일급×4일 주유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1일 8시간, 주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유급휴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기준이 되는데 주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 예 ① 1일 소정근로시간수 = 120시간/20 = 6시간, 주휴수당 6h×시급
- ② 1일 소정근로시간수 = 80시간/20 = 4시간, 주휴수당 4h×시급

\* 월급근로자 : 1일 8시간, 주 40시간근무, 매주 일요일 유급휴일 월정액 300만원지급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300만원은 월소정근로시간+주유급휴일(8시간)이 포함된 임금임

## 2.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파트타임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퇴직한 근로자들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나와 적발되면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1년 미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용자도 많아 연차수당분쟁은 다수 사업장에서 위반사례가 많은 항목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에 유급으로 발생하는 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 연차휴가수당

- ① 6월 계약직 : 근무 중 6월간 개근 후 퇴직- 6일의 연차휴가수당 발생
- ② 1년 계약직 : 80% 이상 출근하고 퇴직한 근로자-15일의 연차휴가수당발생
- ③ 주 3일 6시간 파트타임근로자 : 6월 근무 후 퇴사 시 6일의 연차휴가수당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휴가미사용 후 퇴사 시 15일의 연차휴가수당 발생

## 근로기준보호



※ 연차휴가기간 중 임금

1일 6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시급 10,000원)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 일수

(6시간×5일×4주)/(주5일×4주) = 6시간, 15일 연차미사용 시 수당 = 6×15일×10,000 = 900,000원

### 3.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시간외근로란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무 및 1일 40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로(법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휴일로 지정된 날 근로),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시간외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데 더 나아가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3항 2014. 3. 18 신설). 따라서 1일 6시간, 주3일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일8시간 이내, 주40시간

이내의 근로라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예전에 특성화고 여러 곳에서 노동법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과 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주유소, 편의점, 카페 등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요즘처럼 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상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때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학생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중도 퇴사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반말과 욕설·성희롱을 일삼는 경우 등도 많아서 질문에 답하면서 안타깝고, 부끄럽고, 화도 났던 기억이 납니다.

최저임금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입니다. 서비스건 제품이건 구매자가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고 근로자도 기업입장에선 또 다른 고객일 수 있는지라 노동자와 기업은 공존할 때 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엔 최저생계수단인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www.theonehr.co.kr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파트너 노무사, 경영컨설턴트 홍수경

Tel : 02-3482-3200 Fax : 070-8875-3200 Mobile: 010-2313-0757

(0619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 7층 (135-839)